
실질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2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

2026. 2.



지방재정경제실
재 정 협 력 과

||| 목 차 |||

I. 제도 개요	1
II. 제도운영 현황	2
III. 추진방향	3
IV. 중점 추진 과제	4
1. [제도] 주민 참여기반 확대	4
2. [주민] 주민 참여역량 제고	5
3. [지방] 지방정부 운영체계 정비	6
4. [중앙] 지원 및 평가체계 구축	7
V. 향후계획	9
VI. 참고	10
[제도 개선 전후 비교]	10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법령]	11
[주민참여예산제도 플랫폼 운영 현황]	12
[자치단체별 조례 유형 현황]	1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14

I

제도 개요

□ 개요

※ (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의의) 지자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예산 운용에 대한 책임성 확보

* 참여 방법은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조례로 정하는 방법

-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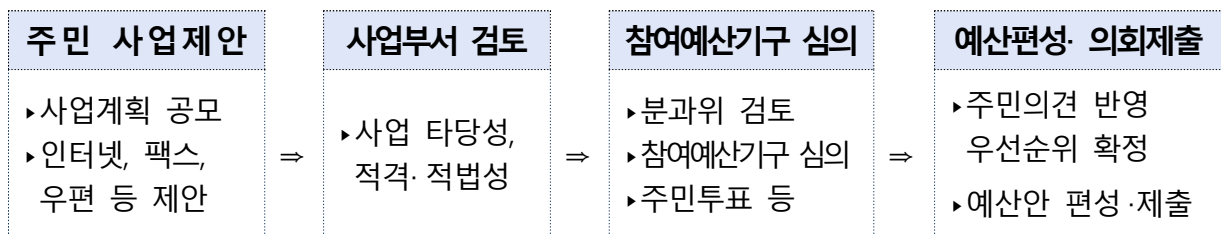
※ 243개 시·군·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운영 중

- (경과) '05년 제도 도입 후 '11년 제도 운영 의무화, '18년 예산 전 과정으로 주민참여 범위 확대, '24년 온라인시스템 '주민e참여' 개통

- (사업 유형)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사업**으로 구분·운영

* 주민 또는 주민자치회가 사업 제안 ** 사업부서 요구사업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예산 반영

< 주민제안사업 참여 절차 (예시) >



□ 주요 내용

- (자치단체 역량강화) 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 제도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정책 설명회, '주민e참여' 플랫폼 기능 개선 등

- (성과평가) 중점 추진 과제 포함한 성과지표 신설, 성과평가 우수 지자체 대상 인센티브 제공(특교, 장관상)

※ '17년부터 실시, '23년까지 자치단체 자체평가 → '24년부터 행안부 주관 전문가 평가

※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 추진계획」은 4월에 수립·배포될 예정

- (홍보·확산) 우수자치단체 사례 중심 다양한 콘텐츠 제작·공유로 지역사회 다양한 계층의 실질적 제도 참여 유도

- ① (예산규모) '26년 주민참여예산사업(주민제안+읍면동 자치계획형) 반영액 0.68조원(15,748건), 예산규모 대비 비율 0.13%
- ② (온라인플랫폼) 243개 지자체중 231개*가 「주민e참여」 개설(실사용 146개)
* 12개 지자체는 별도 주민참여예산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주민e참여」에 링크 연결 완료

구분	시도(5)	시(2)	군(1)	구(4)
12개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수원, 시흥	연천	(서울)서대문, (인천)서구, (대전)중구, (대전)대덕

- ③ (조례) 243개 전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운영 중
- 가장 발전된 3유형은 전년 대비 4개 증가(1유형 8개↓, 2유형 4개↑)

구분	조례 유형			
	1유형	2유형	3유형	계
'24년	33	61	149	243
'25년	30	59	154	243
'25년	22	63	158	243

* 1유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의 구성

2유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강제(필수) 구성

3유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강제(필수) 구성, 분과위원회 구성, 세부규정 및 재정지원 등

- ④ (주민참여예산기구) 240개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미설치 지자체('26년 구성예정) : 인천 서구, 강원 화천, 경북 청송

※ (위원회 설치 지자체수) '23년 236개 → '24년 238개 → '25년 239개(↑증 1) → '26년 240개(↑증 1)

- (성별) 전체 10,068명 중 남성 5,399명(53.6%), 여성 4,669명(46.4%)
- (연령별) 전체 10,068명 중 55~64세가 3,897명(38.7%)으로 가장 많음

구분	24세 이하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계
인원 (명)	122	417	860	1,850	3,897	2,922	10,068
비중 (%)	1.2	4.1	8.5	18.4	38.7	29.0	100

- (위촉방식) 공모 5,367명(53.3%), 단체장 추천 400명, 지방의회 추천 114명, 기초·읍면동 추천 2,821명, 시민단체 추천 250명, 당연직공무원 484명 등

- ⑤ (교육) 총1,404회(평균 참석자 56명), 최다 개최 경기 본청(60회), 경기 군포시(60회), 5회 이하 개최 127개 지자체, 미 실시 53개 지자체

- ⑥ (담당직원 현황) 담당기간 1년이하 186명(75.9%), 업무비중 평균 34.5%

비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통한 주민주권 강화

[목 표]

- [주민] 권한과 책임이 조화된 실질적 참여 확대
- [지방] 지방정부의 제도 운영수준 격차 해소 및 상향 평준화
- [중앙] 주민참여예산제 지원 및 평가체계 구축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제도] 주민 참여기반 확대	- 주민참여 예산규모 증액 - 주민참여 대상사업 확대 - 예산 全 과정 참여 내실화
[주민] 주민 참여역량 제고	- 교육 지원조직 활성화 -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민e참여」 통한 정보공개 확대
[지방] 지방정부 운영체계 정비	- 주민참여예산 운영모델 개선 - 지방정부 심층 컨설팅 추진 - 정부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중앙] 지원 · 평가체계 구축	- 인센티브 확대 등 지방정부 관심 제고 -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 내실화 - 전략적 기획 홍보 추진

IV

중점 추진 과제

1 [제도] 주민 참여기반 확대

○ 주민참여 예산규모 증액

- (기준) 지방정부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등에 부과하는 회비성 세금인 주민세 총액*을 예산 편성 시 최소 기준으로 권고

* '24년 말 기준 징수액 27,950억원 / (세목체계) 개인, 사업소,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분 (세수귀속)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광역시의 경우 사업소·종업원분은 구세로 귀속)

- (규모) '30년까지 3.2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 '25년 기준 '24년 주민세 총액 미만 주민참여예산 편성 지방정부(155개)가 '24년 주민세 총액 이상 예산 편성시 예상되는 주민참여예산규모 : 8,141억 → 32,142억(+24,001억, +294.8%)

※ 특히 올해 지방선거(6.3.) 전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예산 확대 적극 독려

○ 주민참여 대상사업 확대

- 주민(주민자치회)이 제안한 공모사업 외 일반 예산사업에 주민 참여 확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는 주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사업공모 외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설문조사, 그 외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주민참여예산규모 산정 시 주민제안사업 외 일반참여 예산사업은 제외

- 일반 예산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 ①주민참여예산기구가 심의하고, ②그 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를 주민참여예산에 포함

* 선정 기준은 향후 연구용역 통해 구체화할 예정(~'26년 6월)

예) 경기 본청: 도 재정사업 중 20억 이상 자체사업,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등(총 30건, 5,600억, '25년 기준)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 주민참여예산 사업 유형 >

구분	주민 제안 사업		③ 일반참여 예산사업
	①공모사업	②읍·면·동 자치계획사업	
내용	공개모집을 통해 일반주민이 사업 제안	주민자치회 등에서 사업 제안	일반사업 중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예산	전액	전액	일부*
← 주민참여예산규모 →			

* 예시 : 해당 지자체 정책사업비의 0.01% 이상 규모의 재정사업 중 주민의견이 필요한 사업 대상 주민참여예산기구가 심의하고, 그 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하는 사업

○ 예산 주 과정 참여 내실화

- 예산편성 외 사업 집행·결산 단계까지 참여 확대(예산 편성 기간(7~10월) 외에도 주민참여예산기구 등을 연중 상시 운영) 내실화

(1~2월)	(3월)	(4~6월)	(7~8월)	(9~10월)	(11~12월)
위원회	예산학교	위원회	분과위	위원회	지원조직
사업성과 평가보고회	참여예산 교육	집행결산감사*	제안사업 1차 심사	제안사업 2차 심사 및 주민총회 개최	제도개선연구
← 집행 모니터링 →		← 결산 →	← 예산 편성 →		

* 예) 대구본청: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실태를 모니터링 (결과는 홈페이지 공개)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 부서는 시정조치

- 모니터링단, 주민총회 등 주민 참여 저변 확대 독려, 정규 제안 접수 중심의 주민 제안을 수시 제안접수로 확대

② [주민] 주민 참여역량 제고

○ 교육 지원조직 활성화

- 공무원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 주민 등 전문성 제고 및 제도 연속성을 위한 교육 전담 지원조직 활성화 장려

< 교육 관련 지원조직 사례 >

- ▶ (경기) 주민참여예산제도연구회(민간위탁)가 교육, 주민제안사업 사후관리 컨설팅 등 지원
- ▶ (대구) 시민재단(민간위탁)이 읍면동별 연 1~2회 파견, 지역회의 주재 및 사업 발굴 등 지원
- ▶ (제주) 퇴직 공무원이 주민참여예산 사업 기획, 사업 제안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본 교육(이론에서 실무 위주)은 온라인 통해 필수이수제로 운영하고, 대상별 특화·심화 교육은 대면·참여형으로 확대하여 전문성 제고

< 예산학교 활용(안) >

방식	대상	내용
온라인	▶ 모두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자치단체 예산과정 이해 ▶ 주민제안서 작성 과정, 주민제안사업 모니터링 방법 등
오프라인	▶ 특화	▶ (청소년·어린이) 맞춤형 알기쉬운 예산학교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교육프로그램
	▶ 심화	▶ (주민참여예산기구) 주민제안사업 심사, 결과서 작성방법 등 (공무원) 인식 제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 학습 등

○ 「주민e참여」 통한 정보공개 확대

- 「주민e참여」에 예산규모·사업내역,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현황, 우수사례 등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 추가

※ 예산현황, 제안건수, 채택현황 등 지방정부별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화면 제공

< 「주민e참여」 카테고리 구성 개선안 >

<제도 소개>				(기존)
제도 개요				
운영 조례				
운영계획·실적	① 예산규모	② 사업내역		(추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① 구성현황	② 운영현황	③ 회의록	
우수사례	① 예산학교 사례	② 홍보 사례	③ 주민참여사례 ④ 지역특화사례	

③ [지방] 지방정부 운영체계 정비

○ 주민참여예산 운영모델 개선

- 광역-기초 간 협업 모델을 발굴하고, 기초의 경우 주민 참여 기구인 주민자치회 등과 주민참여예산제 연계
- 광역은 사업의 조정·지원, 기초는 사업의 실질적 집행을 담당
- 읍면동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자치계획에 기반해 사업을 발굴하고, 시군단위에서는 주민참여예산기구가 해당 사업을 심의

⇒ ‘광역-기초(주민자치회 연계) 협업 모델’을 개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표준 조례안」 개정 통해 지방정부 대상 확산·제도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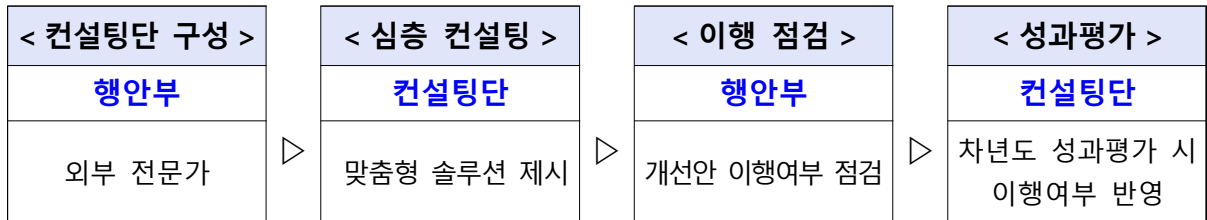
< 광역-기초(주민자치회 포함) 협업 모델(안) >

대상	사업	역할
광역	시도사업 (광역단위 처리가 효율적이거나 시도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사업공모) 주민제안사업 공모 및 시군 분배 - (교육 및 재정 지원) 교육 전담 조직, 시도비 지원 - (온라인 플랫폼) DB구축, 생성형 AI 적용 등 - (홍보) 광역-기초 협업 통한 집중 홍보 등
기초	시군구사업 (기초단위 처리가 효율적이거나 시군구에 한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주민자치회> 사업 선정* → <주민참여예산기구> 사업 심의 → <지방정부> 예산안 편성 * ①지역/마을을 자원 조사 ②지역의제 도출 ③우선순위 결정 ④자치계획 수립 ⑤ 주민총회 운영

○ 지방정부 심층 컨설팅 추진

- 지방정부별 제도운영 편차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심층·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행여부 점검

※ 외부 전문가 확대, 사전 현황 조사(서면)를 통해 맞춤형 솔루션 제시(대면)



○ 정부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농촌·도시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담당자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민e참여'에 게시

< 지역별 특화 우수사례(예시) >

유형	지방정부	주요내용
도시지역	서울 은평구	▶ 반지하 공간을 매입하여 '소공여(소통의 공간과 여가활용)'로 활용, 주민들간의 배움과 나눔 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농촌지역	경남 거창군	▶ 농업 관련 주민참여예산 제안 전담 '농사청(農思聽)' 운영, 화훼 소비 활성화 지원 및 분뇨처리액비 운반차량 교체 사업 등 추진
청년층 거주지역	경기 의정부	▶ 높은 청년 인구비율 (26.8%)을 반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48명)의 약 21% (10명)을 청년 으로 구성

- 지방정부 유형별(주민자치회 연계형, 광역-기초 협업형 등) 우수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운영모델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도입·확산

4 [중앙] 지원 및 평가체계 구축

○ 인센티브 확대 등 지방정부 관심 제고

- 예산규모 확대, 주민자치회 연계 등 **활성화 과제**를 이행한 우수 지방정부 대상 장관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 대폭 확대
- 중앙-지방 회의체(중앙지방협력회의, 기초실장회의 등)에 '주민참여예산 제도 활성화' 안전 상정 통해 지방정부 관심도 제고

○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 내실화

- 예산규모 확대, 주민자치회 연계 등 활성화 과제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성과 평가에 신규 지표 신설

< 성과평가 지표체계 개선안 >

구분	현재	개선
정성평가 (30점)	발전가능성(20), 우수시책 사례발굴(20)	발전가능성(10), 우수시책 사례발굴(10) 주민자치회 연계 등 활성화 사례(10)
정량평가 (70점)	책임성(15), 투명성(10), 민주성(15), 전문성(10), 효율성(10)	▶ 책임성(10), 투명성(10), 민주성(10), 전문성(10), 효율성(10) 예산규모 확대(20) 컨설팅 결과 이행 시 가점 부여(2) ※ 심층 컨설팅 실시 지방정부 대상
가점(2)	-	

- 전년대비 개선성과(증감률 등 상대지표 활용)가 높은 지방정부 대상 별도 포상 부문을 신설하는 등 제도운영 개선 노력 지원

※ 구체적인 내용은 「'2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계획」(4월 말 배포 예정) 참고

○ 전략적 기획 홍보 추진

- 지방정부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 통해 집중 홍보, 행안부에서 표준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지방정부에서 송출 등
-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지방정부 중심으로 시기별·지역별 홍보 추진

※ 예시 : 5월 수도권, 7월 전라권, 9월 충청권, 11월 경상권 우수 지방정부 대상 콘텐츠는 지방정부가, 행안부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협업 홍보 추진

V

향후계획

주요 추진내용	추진기관	일정
주민 참여기반 확대		
■ 주민 참여 예산 규모 증액	지방정부	~'30
■ 주민 참여 대상 사업 확대 - 연구용역 통해 일반참여예산 포함 기준 설정 - 예산편성 기준 등에 규정	행안부 행안부	'26.上 '26.下
■ 예산 쏠 과정 참여 내실화 - 주민참여예산기구 연중 상시 운영 - 수시제안 접수 확대	지방정부 지방정부	수시 수시
주민 참여역량 제고		
■ 교육 지원조직 활성화 - 지원조직 사례 발굴 및 전파 - 광역-기초 운영모델 적용 이후 성과평가 반영	행안부 행안부	'26.下 ~'28
■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방정부	수시
■ 「주민e참여」 통한 정보공개 확대 - 시스템 기능 개선 - 시스템 기능 고도화	행안부 행안부	'26.下~ 계속
지방정부 운영체계 정비		
■ 주민참여예산 운영모델 개선 - 광역-기초 협업모델 개발(연구용역) - 의견수렴 등을 거쳐 운용조례안 개정	행안부 행안부	'26.上 ~'27
■ 지방정부 심층 컨설팅 추진 - 컨설팅 대상 지방정부 선별 - 선별 지방정부 대상 컨설팅 실시	행안부 행안부→지방정부	'26.上 '26.下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우수사례 발굴 - 운영모델과 연계하여 도입·확산	행안부 행안부→지방정부	~'26.上 ~'27.下
중앙정부 지원·평가체계 구축		
■ 인센티브 확대 등 지방정부 관심 제고 - 중앙-지방 회의체 안건 상정 - 포상 및 특교세 교부	행안부 행안부→지방정부	'26.3분기 '26.4분기
■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 내실화 - 성과평가 체계 개선 - 성과평가 추진계획 수립·통보 및 설명회	행안부 행안부→지방정부	'26.2분기 '26.2분기
■ 전략적 기획홍보 추진	행안부, 지방정부	수시

참고1

제도 개선 전후 비교

1 [제도] 주민 참여기반 확대

현재	개선
▶ 예산규모 지속 감소 ▶ 사업 범위 소극적 해석 ▶ 형식적 쏠 과정 참여	▶ 주민참여 예산규모 증액 - (기준) 최소 주민세 이상 / (규모) '30년까지 3.2조원 ▶ 주민참여 대상사업 확대 - 공모사업 외 일반예산사업에 주민 참여 확대 ▶ 예산 쏠 과정 참여 내실화 - 예산편성 외 집행결산까지 확대, 수시제안접수 활성화

2 [주민] 주민 참여역량 제고

현재	개선
▶ 교육 지원조직 非 활성화 ▶ 주민 대상 체계적 교육 부족 ▶ 정보 부족, 형식적 정보 공개	▶ 교육 지원조직 활성화 - 주민 등 전문성 및 제도 연속성 위한 교육 전담조직 활성화 ▶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온라인) 기본교육, (오프라인) 특화심화 교육 ▶ 주민e참여 기능개선을 통해 정보 공개 확대 -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 중심 공개 확대

3 [지방] 지방정부 운영체계 정비

현재	개선
▶ 광역-기초 운영 중복 ▶ 제도 운영수준 양극화 ▶ 우수사례 공유 부족	▶ 주민참여예산 운영모델 개선 - 광역-기초(주민자치회 포함) 협업 모델 개발·제도화 ▶ 지방정부 심층 컨설팅 추진 - 전문가 확대, 현황조사 통한 맞춤형 솔루션 제시 ▶ 지방정부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우수사례-운영모델 연계해 지역실정에 맞게 도입·확산

4 [중앙] 지원·평가체계 구축

현재	개선
▶ 인센티브 규모 감소 ▶ 형식적인 성과평가 운영 ▶ 제도 홍보 부족	▶ 인센티브 확대 등 지방정부 관심 제고 - 장관표창 및 특교세 등 재정 인센티브 대폭 확대 ▶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 내실화 - 중점 추진 과제 및 전년대비 개선정도 등 반영 ▶ 전략적 기획 홍보 추진 - 지방정부 협업, 다양한 매체 통해 집중 홍보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는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3

주민참여예산제도 플랫폼 「주민e참여」 운영 현황

□ 추진개요

- (목적)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차세대지방재정 관리시스템(e호조+)과의 연계로 체계적이고 투명한 사업관리('23.9월 오픈)
- (현황) 243개 자치단체 231개*가 '주민e참여' 개설 운영중('26.1.18. 기준)

* 12개 지자체는 별도 주민참여예산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주민e참여」에 링크 연결 완료

구분	시도(5)	시(2)	군(1)	구(4)
12개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수원, 시흥	연천	(서울)서대문, (인천)서구, (대전)중구, (대전)대덕

□ 대상자별 이용현황

- (주민) △공모·신청·접수·결과 확인, △전자투표, △사업 진행현황 확인, △챗봇(국민비서 구뻘) 상담 서비스 등 이용

※ 휴대폰 본인인증 적용, 중복투표 방지 기술을 통해 주민 제안, 투표의 신뢰성 확보

- (자치단체) ①'주민e참여'에서 공고 및 선정결과 공표, ②'e호조+'에서 접수·심사·편성·집행·결산·통계 등 쏘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

※ 공모사업 검토·심사 결과 등의 진행상황의 투명한 공개와 예산편성·집행 내역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결산 결과의 공개 등 가능

< 주민참여 예산제도 플랫폼(「주민e참여」) 운영화면 >

「주민e참여」 사이트

사이트 내 서울 마포구 운영화면

참고4

자치단체별 조례 유형* 현황

(243개 자치단체, '25년 기준)

구분	1유형(22)	2유형(63)	3유형(158)
시·도 (17)	충남, 전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시 (75)	이천, 계룡, 여수, 영천	동두천, 구리, 남양주, 오산, 광주, 충주, 보령, 포항, 상주, 문경, 통영, 사천, 밀양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과천,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안성, 김포, 화성, 양주, 포천, 여주,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청주, 제천,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 당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목포, 순천, 나주, 광양,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경산,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
군 (82)	울주, 양구, 음성, 서천, 보성, 완도, 영양, 고령, 성주, 예천, 울릉, 남해	기장, 강화, 옹진, 횡성,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인제, 고성,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태안, 무주, 부안, 담양, 곡성, 구례,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진도, 신안, 의성, 청송, 청도, 칠곡, 봉화, 울진, 함안, 고성, 하동, 산청	달성, 군위, 연천, 가평, 양평, 홍천, 영월, 양양, 옥천, 진천, 금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완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고흥,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영덕, 의령, 창녕, 함양, 거창, 합천
구 (69)	서울중구, 서울용산, 부산서구, 부산동구	서울광진, 서울동대문, 서울노원, 서울마포, 서울서초, 부산중구, 부산북구, 부산강서, 부산수영, 대구남구, 인천연수, 인천서구, 대전유성	서울종로, 서울성동, 서울중랑, 서울성북, 서울강북, 서울도봉, 서울은평, 서울서대문, 서울양천, 서울강서, 서울구로, 서울금천, 서울영등포, 서울동작, 서울관악, 서울강남, 서울송파, 서울강동, 부산영도, 부산부산진, 부산동래구, 부산남구, 부산해운대구, 부산사하, 부산금정, 부산연제, 부산사상, 대구중구, 대구동구, 대구서구, 대구북구, 대구수성, 대구달서, 인천중구, 인천동구, 인천미추홀, 인천남동, 인천부평, 인천계양, 광주동구, 광주서구, 광주남구, 광주북구, 광주광산, 대전동구, 대전중구, 대전서구, 대전대덕, 울산중구, 울산남구, 울산동구, 울산북구

* 1유형 : 조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의 구성

2유형 : 조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강제(필수) 구성

3유형 : 조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강제(필수) 구성, 기타기구 구성, 세부규정 및 재정지원 등

참고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243개 자치단체, '25년 기준)

구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미구성(3)
	위원회만 구성(33)	기타기구 병행*(207)	기타기관 구성(1)	
시·도 (17)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 (75)	구리, 안동, 문경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여주,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청주, 충주, 제천,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군 (82)	기장, 강화, 평창, 정선, 철원,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영동, 괴산, 단양, 금산, 순창, 부안,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청도, 고령, 칠곡, 예천, 봉화, 울진	달성, 군위, 용진, 울주, 연천, 가평, 양평, 홍천, 횡성, 영월, 보은, 옥천, 증평, 진천, 음성,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담양,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의성, 영양, 영덕, 성주, 울릉,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화천, 청송
구 (69)	서울동대문, 인천연수구	서울종로, 서울중구, 서울용산, 서울성동, 서울광진, 서울중랑, 서울성북, 서울강북구, 서울도봉, 서울노원, 서울은평, 서울서대문, 서울마포, 서울양천, 서울강서, 서울구로, 서울금천, 서울영등포, 서울동작, 서울관악, 서울서초, 서울강남, 서울송파, 서울강동, 부산중구, 부산서구, 부산동구, 부산영도 부산부산진, 부산동래, 부산남구, 부산북구, 부산해운대, 부산사하, 부산금정, 부산강서, 부산연제, 부산수영, 부산사상, 대구중구, 대구동구, 대구서구, 대구남구, 대구북구, 대구수성, 대구달서, 인천중구, 인천동구, 인천미추홀, 인천남동, 인천부평, 인천계양, 광주동구, 광주서구, 광주남구, 광주북구, 광주광산, 대전동구, 대전중구, 대전서구, 대전유성, 대전대덕, 울산중구, 울산남구, 울산동구, 울산북구	인천서구	인천서구

*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민관협의체, 연구회, 운영위원회, 청소년위원회, 기타기구 등 다양하게 운영

** 기타기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할 수행